

# 禮山郡 늘푸른禮山21推進協議會支援條例案

## 檢討 報告

### □ 提案理由

- 21세기 예산군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하는 예산군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### □ 主要骨子

- 협의회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3조)
- 보조금의 지원은 경상비 사업비로 구분 지급하며 교부신청·결정 및 정산은 예산군 보조금관리 조례에 의하도록 함 (안 제4조)
- 환경보전 관련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하도록 함 (안 제5조)
- 협의회 운영상황 등을 군소속 공무원이 확인·검사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6조)

### □ 參考事項

- 관련법령
  - 환경정책기본법 제33조, 34조, 35조
- 기타사항
  - 도내 조례 제정 지방자치단체 「충남도·천안시·보령시」

檢討意見

- 본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환경보존을 위하여 환경관련정책을民間단체로  
파급 확산시키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나
- 조례안 제5조(사무위탁)에서 협의회에 위탁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 
업무는 무엇이며
- 앞으로의 협의회 사무국의 운영방안, 재정부담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  
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